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4

2022년 9월 28일
보건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 및 제출자** :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
2. **회부일자** : 2022년 9월 2일
3. **상정일자** :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9월 20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시민건강국장 박유미)

1. 제안이유

○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해당 조례 〔별지 서식〕 '입원환자 서약서 서식' 중 '주민등록번호'를 '생년월일(성별)'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별지 서식(입원환자 서약서)의 '주민등록번호' 작성란을 삭제하고

‘생년월일(성별)’ 작성란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2022. 5. 19.~ 2022. 6. 08. (결과: 의견없음)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첨부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개정안의 취지

○ 본 개정안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내용

○ 개정안은 이 조례 별지 서식인 ‘입원환자 서약서’의 ‘주민등록번호’ 작성란을 ‘생년월일(성별)’로 변경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[별지서식] 입원환자 서약서 **입원환자 서약서** (생략) 환자본인 주소: (전화번호:) 성명: (인) 주민등록번호:	[별지서식] 입원환자 서약서 **입원환자 서약서** (현행과 같음) ------- ---: (-------:) ---: (--) 생년월일(성별):

나. 검토의견

○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[1]에서는 **개인정보처리자[2]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나,** "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" 등 **법령의 범위 또는 일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음.**

○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보다 엄격히 관리·통제하기 위한 것이며, **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[3]를 부과하도록 규정**하

---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
② ~ ④ <생략>

2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
1의2. ~ 4. <중략>
5. "개인정보처리자"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6. ~ 8. <생략>

3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5조(과태료) ① <생략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~ 4. <중략>
4의2.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
4의3. ~13. <중략>
③ ~ ④ <중략>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고 있음.

○ 그런데 이 조례 제5조제3항[4]에는 “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′입원환자 서약서 서식′ 중에 ‘주민등록번호’ 작성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**이는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행위로 보여지며, 아울러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[5]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**

○ 이 조례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**그동안 입원환자로부터 제출받은 ′입원환자 서약서’의 수집·처리 등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점검**하고, **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**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---

4) **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환자의 보호 등)** ①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(수술실, 중환자실, 진료실, 입원실, 응급실, 임상검사실,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병원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이하 같다)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 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원실에서 환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환자복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<생략>

5) **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)** **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**

1.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2. **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,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**
3.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(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요구할 권리
4.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, 정정·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
5.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4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해당 조례 [별지 서식] '입원환자 서약서 서식' 중 '주민등록번호'를 '생년월일(성별)'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별지 서식(입원환자 서약서)의 '주민등록번호' 작성란을 삭제하고 '생년월일(성별)' 작성란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2. 5. 19. ~ 6. 8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지 서식]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(성별)”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지서식] 입원환자 서약서 **입원환자 서약서** (생략) 환자본인 주소: (전화번호:) 성명: (인) 주민등록번호:	[별지서식] 입원환자 서약서 **입원환자 서약서** (현행과 같음) ------- ---: (-------:) ---: (--) 생년월일(성별):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본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내 별표 서식 문구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사항이 없음

4.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이선재(2133-9246)